



정희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책연구부장

자율 환경관리의 활성화 방안<5>

목 차

제1장 서론

- 1. 산업환경규제와 새로운 도전
- 2.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장 현행 스트레스 관리제도와 문제점

- 1. 환경관리 대상업체의 현황과 분포
- 2. 산업별 환경오염물질 배출규모와 양태
- 3. 현행 산업환경 관리제도
- 4. 현행 산업환경관리제도의 한계와 규제 개혁 과제

제3장 자율화 경로의 이론과 과제

- 1. 자율환경관리의 의의와 특성
- 2. 자율환경관리의 이론적 평가
- 3. 자율환경관리의 유형
- 4. 자율환경관리의 운영 절차
- 5. 자율환경관리의 설계 조건

제4장 스트레스 관리기법과 자율화 경로의 국제동향

- 1. 일본
- 2. 미국
- 3. 유럽연합
- 4. 기타

5. 종합평가

제5장 우리나라 산업의 환경영향과 자율환경관리 실태

- 1. 개별기업의 환경영영촉진제도
- 2. 폐기물감량화 및 재활용목표를 제도
- 3. 사업자단체의 자율환경관리 조직
- 4. 지역기반의 자율환경관리 조직
- 5. 에너지 관련 자율환경관리 체계
- 6. 평가와 문제점

제6장 자율화 경로의 활성화■ 우호 정책 방안

- 1. 자율환경관리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 2. 자율환경관리의 추진모형과 추진 방법
- 3. 환경영향을 통한 자율환경관리 지원

제7장 결론 및 암후고지

3. 자율환경관리의 유형

3.1 특성에 따른 자율환경관리의 유형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볼 때 자율환경관리는 ① 목표지향적 자율협약, ② 성과지향적 자율협약, ③ 연구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④ 자율적인 감시와 보고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III-2〉 자발적 협약의 4가지 유형

| 유형 | 성격 |
|------------------|--|
| 목표에 근거한 자발적 협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을 통해 설정된 실천목표로 구성 · 법적 구속력을 가지거나 향후 규제에 대한 강력한 사전예고 성격이 강함 · 네덜란드, 독일의 프로그램들이 해당 |
| 성과에 근거한 자발적 협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을 통해 설정된 성과 목표로 구성 · 법적 구속력이나 향후 규제를 전제로 하지 않음 · 미국, 캐나다, 호주의 프로그램들이 해당 |
| 상호협력의 R&D 자발적 협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st Practice"의 미개척 분야를 진보시킬 새로운 기술개발을 강조 · 시장기능과 인센티브를 통한 정부의 유인책 필요 |
| 감시 및 보고 자발적 협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자발적 협정의 일반적 구성요소 · 독일식으로도 활용가능 |

3.1.1 목표지향적 자율협약

목표지향적 자율협약(Target-based VA)은 협상을 통한 협약(negotiated Agreement)이라고도 하며 협상을 통해 설정된 목표가 법적 구속력을 갖거나 향후의 규제조건

이 되어 강력한 규제의 사전예고로서의 성격도 지닌다. 이러한 협약에는 통상 세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자율활동이 협정의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엄격한 법규시행이나 강력한 규제와 같은 강제활동이 수반되는 경우이다. 둘째는 특정기간내에 에너지효율성을 어느 정도 향상시킨다는 목표나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저감시키기 위한 기업의 장기계획에 대한 약정이다. 미국EPA의 유해화학물질 저감을 위한 33/50프로그램이 이 범주에 속한다. 끝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협정이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국가의 강제성 높은 프로그램이 이에 속한다.

3.1.2 성과지향적 자율협약

성과지향적 자율협약(Performance-based VA)은 협의를 통한 자발적인 성과목표로 구성되는데 법적 구속력이나 향후의 규제내용이 전제가 되지는 않는다. 기업은 일차적으로는 새로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차적으로는 시장과 소비자에 환경친화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신뢰감을 얻는 효과를 노리며 참여한다. 성과지향적 자율협약 프로그램은 산업별로 어떤 성과기준을 설정하여 그것을 달성하는 제도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Green Lights, Climate Wise, Motor Challenge, the Voluntary Aluminum Industry Partnership(VAIP), Coalbed and Landfill Methane Recovery Outreach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가 이에 속한다고 하겠다. 성과지향적 자율협약은 목표를 결정하는 주체에 따라 프로그램결정형과 참여자결정형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자율협약의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된 특정한 성과목표를 참여자가 선택하는 방식이다. 반면 후자는 참여자가 스스로 일정기간 동안의 자신의 성과향상 목표를 수립하는 방식이다.

3.1.3 연구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연구개발을 위한 상호협력(Co-operative R&D VA)은 미개척분야를 진보시키려는 새로운 기술개발에 초점을 둔

다. 이 방식은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실천목표나 자발적인 성과목표를 포함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정부가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생산공정이나 제품을 혁신시키는 연구개발을 위해 유인장치를 마련하여 지원하는 경우이다. 연구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자율협약 프로그램은 신규 또는 고도성과기술(high-performance technologies)의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공동연구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 에너지부(DOE)의 Industry of the Future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예이다.

3.1.4 자율적인 감시와 보고

자율적인 감시와 보고(Monitoring and Reporting VA)는 모든 자발적인 환경협약의 일반적인 구성요소이다. 기업은 절감목표, 추진일정, 감시, 보고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와 협의하여 협약을 맺게 되고 기업의 추진실적과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한 꾸준한 평가와 개선노력이 자율협약의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로는 자율적인 감시와 보고만을 독립적으로 협약할 수도 있다. 자율적인 감시와 보고협약은 미국의 모든 자율협약제도에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보고는 개별 자율협약 프로그램별로 자체적으로 수행된다. 예를 들면, Green Lights와 the VAIP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보고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감시와 보고협약은 U.S. 1605b reporting program과 같이 구체적인 공정보고지침에 기초한 국가자율 GHG 보고기능과 연계될 수도 있다. 미국의 보고와 감시협약은 전형적으로 외부적인 감사나 검증(external audit or verification)보다는 오히려 공정접근(process approaches)을 이용하고 있다.

3.2 참여주체에 따른 자율환경관리의 유형

자율환경관리는 참여주체에 따라서 기업의 자발적환경 개선서약, 환경개선사적계약, 환경개선협정, 자율참여환

경관리제도 등 네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⁴⁾ 그런데 통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자율환경관리는 환경개선사적계약을 제외한 세가지를 주로 말한다. 어떤 형식으로든 정부가 관여하는 자율환경관리인 환경개선협정과 자율참여환경관리제도는 전자는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 많이 사용되는 반면 후자는 미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2.1 기업의 자발적 환경개선서약

기업의 자발적환경개선서약(unilateral commitments)은 환경개선계획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 자신에 의해 수립되고 주주, 고객, 그리고 종업원에게 통지되는 경우이다. 환경개선목표, 법규준수 조치, 감시 및 보고 등은 서약하는 기업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자신의 선언의 신뢰성을 증진시키거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제3자에게 이행상황감시나 분쟁해결권한을 이양할 수 있다. 배출업소의 자율환경개선선언의 대표적인 예는 카나다의 화학물질제조업체협회가 시작한 책임배려운동(Responsible Care initiative)이다. 이는 화학산업에 대한 공중의 신뢰저하와 보다 엄격한 규제의 위협에 대응하여 고안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사업장의 안전과 환경에 대한 이행상태 증진을 위해 고안된 원칙과 규칙을 포함하여 이의 시행을 다짐하고 있다.

3.2.2 환경개선사적계약

환경개선사적계약(Private Agreements)은 기업(또는 기업집단)과 이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로 인해 피해를 받는 자(또는 집단으로 근로자, 지역주민, 인근공장 등)나 이들의 대표자(예를 들어 공동체조직, 환경단체, 노동조합, 사업자단체 등)간에 체결된 계약이다. 이 협약은 환경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오염경감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예로는 카나다의 자동차노동조합이

30개 공장과 50,000명의 종업원 그리고 부품의 생산자와 공급자를 포함하는 자동차산업과 청정생산조건에 관해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다. 볼보사가 영국정유사와 아황산가스피해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다.

3.2.3 환경개선협정

환경개선협정(Negotiated Agreements)은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공공당국(자치단체, 정부, 연방, 또는 지역)과 배출업체가 맺는 계약이다. 이 협약은 환경오염 감축목표 등 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한 시한을 포함한다. 정부는 배출업소의 자율적인 행동이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지 않는다면 배출기준이나 환경세 등 새로운 규제입법을 하지 않는다고 서약한다. 협상에 의한 환경개선협약은 네덜란드의 국가환경정책계획(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Plan)의 핵심수단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이를 서약(Covenants)라고 부르는데 네덜란드 정부는 기후변화가스와 여타 환경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100개이상의 산업부문과 서약을 체결하였다.

3.2.4 자율참여환경관리제도

자율참여환경관리제도(Public Voluntary Programme)은 이행기준, 기술기준, 또는 관리방식 등 환경당국 등 정부가 수립한 기준에 배출업소가 동의하여 참여하는 경우이다. 정부의 프로그램은 가입회원의 조건, 오염감축 의무조건, 이행상황 감시기준, 그리고 결과의 평가방법 등을 규정한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당국은 참여기업에 연구개발비 보조, 기술지원, 환경표지사용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주요 사례로는 유럽연합이 199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태경영 및 감사계획(Eco-Management and Auditing Scheme), 미국 환경보호처의 에너지별(Energy Star), 녹색정등(Green lights), 33/50프로그램 등이 있다.

14) OECD/OCDE, Voluntary Approaches for Environmental Policy in OECD Countries, ENV/EPOC/GEEI(98)30, pp9-11

4. 자율환경관리의 운영절차

자율환경관리를 운영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운영된다.

4.1 프로그램의 개발과 설계

자율환경관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설계가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강제적이 아닌 자율적인 유인이 의존하는 자율협약 프로그램은 에너지효율성, 에너지절약, 온실가스저감 등 환경성과 달성을 평가하는 데 본질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설계시에는 자율협약은 결코 단독으로 수행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자율관리제도는 규제, 재정·금융수단과 같은 다른 정책수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다른 정책 목표와의 갈등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그 역할과 기능을 유심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

율협약 프로그램 수립은 위와 같은 다른 정책수단들과 상호보완적인 맥락속에서 이루어져도록 해야 한다.

자율협약 프로그램의 목표설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이나 접근이 있을 수 있다. 에너지효율성 달성이 주요 에너지 정책전략과 기후변화전략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목표설정에 대한 접근에 일치된 하나의 견해나 접근이 존재하기란 쉽지 않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수동적으로만 받아 들이지 않고 목표설정을 위한 과정·논의·협상에 정부나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4.2 참여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자율협약의 대상은 크게 산업별 협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나누어 진다. 후자의 경우 기업들은 협약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특히 무임승차자(free riders)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¹⁵⁾ 자율협약의 주요 관심사

항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참가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즉 공의사업체, 제조업체, 정부부문, 연구소 등의 광범위한 참가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폭넓은 참여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를 넓히고 공고히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자율환경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자율환경관리프로그램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확대가 중요하다. 그리고 참여대상기업으로 하여금 쉽게 응모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도 필요하다.

자율참여환경관리제도(Public Voluntary Programme)은 이행기준, 기술기준 또는 관리방식 등 환경당국 등 정부가 수립한 기준에 배출업소가 동의하여 참여하는 경우이다. 정부의 프로그램은 가입회원의 조건, 오염감축 의무조건, 이행상황 감시기준, 그리고 결과의 평가방법 등을 규정한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당국은 참여기업에 연구개발비보조, 기술지원, 환경표지사용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4.3 협약서의 제출과 협상

자율협약 프로그램의 매력은 정책설계가 간단하며, 협상이 용이하고 추진이 신속하다는 데 있다.¹⁶⁾ 자율환경관리는 대상자가 자율관리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협약을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당사자간에 합의서가 조인되므로 성립된다. 다수의 중소기업이 존재하는 산업의 경우에는 개별기업과 직접 협상하는 것보다 산업별 협회와 협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 경우 한가지 요구되는 것은 개별 회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강력한 협회조직이 전제되어야 한다. 개별 회원들의 이러한 지지가 없으면 협상과정이 어렵고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

4.4 이행상황 감시와 평가

자율환경관리가 협약서의 내용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연도별 추진결과를 조사 분석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고 성과를 홍보하며 부족하다면 계획서를 보완하는 과정이다. 자율협약 프로그램의 감시·감독과 보고는 자율협약의 평가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 특히 프로그램의 설계와 추진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루어지게 된다. 주기적인 검토는 문제점, 비효율성, 여건변화에 대한 초기 파악을 가능케 하여 궁극적으로 성과달성을 제고시키는 기능을하게 된다. 또한 평가는 어느 전략이 가장 적합하고, 실제 결과는 어떠하며, 목표달성을 위해 향후 어떠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한지를 결정케 해 준다. 부문별 조직 즉 각종 산업별 협회는 개별 기업들로부터 제출된 정보를 수집·분류·조정함으로써 중요한 중계역할을 수행한다. 감시·감독은 기업활동의 발전과 활력을 위해 작용하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기업에게 번거로움을 야기하고 자체적으로도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다. 또한 감시·감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출된 기업의 모든 정보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4.5 위반에 대한 제재

자율협약의 경우 성과달성에 대한 위반시 공식적인 처벌제도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협약 프로그램의 경우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가벼운 간접적인 제재(stick behind the door)의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산업에너지보존 자율 프로그램은 국가의 환경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구사항을 따라야 할 만큼 엄격하다.

한편 많은 공공부문 관계자들은 자율협약 프로그램의 성공 열쇠는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 더 강력한 수단 도입과 가벼운 간접적인 제재 전략이 있느냐 없느냐에 크게 좌우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재가 자율협약 프로그램의 성과달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것에 대해 확실한 증거는 없다.

5. 자율환경관리의 설계조건

5.1 자율환경관리의 성공조건

자율환경관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어떠한 조건하에서 환경영경제체계를 활발하게 구축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이 환경영영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도입하여 실천하려고 하는 배경에는 주로 기업경영의 외부적 여건이 환경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자율협약은 적절히 계획되고 추진될 때 다른 부수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또한 경제와 환경 목표를 통합하는 데 역시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율협약의 성공은 참가, 모니터링, 보고체계에 달려 있다. 자율환경관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자율환경관리는 많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성공의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참여자의 입장을 잘 배려한 프로그램으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율환경관리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운영된다. 때문에 자율환경관리프로그램은 개별 산업과 기업의 여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적극적인 참여유인이 있어야 하며 또 참여가 용이하

15) 캐나다의 에너지효율성 자율협약 프로그램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소비하고 있는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자율협약 프로그램은 거의 모든 에너지소비산업부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6) 그러나 네덜란드의 프로그램의 예에서 보듯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책의 설계(design)·협상·추진·감시감독·평가 체계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다. 한편으로 어떤 국가는 필요한 정책설계와 감시감독 체계없이 자율협약을 추진하는 사례도 있다. 어째든 자율협약은 단순히 상징적인 노력의 일환이 아니라 주어진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야 한다. 그런데 협약에서 합의된 목표의 달성을 위해 최고경영층의 높은 관심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최고경영층이 관심을 보일만한 설득력있는 목표설정과 추진 필요성에 대한 부각이 긴요하다. 때문에 현존 정책구조나 목표와 잘 연계되어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경제적, 시장경제적 수단과 연계되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자율환경관리의 성공여부는 어떤 기업의 환경경영에 대한 인식이 소비자의 구매형태에 반영되어 기업의 경영성과를 좌우할 때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소비

자와 가까운 기업일수록 자율참여도가 높아 소비자와 근접한 산업을 대상으로 한 자율환경관리가 성공가능성이 보다 높다는 연구결과¹⁷⁾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정부, 관련단체 등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과 상호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자율환경관리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반국민과 환경단체나 언론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협약은 고도의 조직과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높은 수준의 참여도를 올릴 수 있는 경우에 특히 효과적이다. 때문에 광범위한 사회집단이 환경목적으로 관심을 보여야 대상업체의 자발적인 노력을 기대할 수 있기

〈표 III-3〉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주요과제별 내용

| 주요과제 | 선택대안 | 도입방안 |
|----------|---|---|
| 도입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목표 · 참여기업의 성과달성을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법률, 문화, 경제수준 등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목적의 설정 |
| 대상분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환경정책분야 · 에너지 절감 및 효율 분야 · 온실가스 배출감축 분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 특정분야에서 단계적 분야 확대 |
| 법적규제의 성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구속력과 규제대상 · 법적 구속력 없는 자율참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규제 보다 모니터링 및 보고 등 자율적 규제수단 우선 활용 |
| 계약참여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협회 중심의 참여 · 기업단위의 개별참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회와 기업의 공동참여방안 |
| 의무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서, 연차보고서 등의 제출 · 실적, 성과에 대한 대외 공개 · 특별한 의무없이 자율적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 성과 등의 대외 공개 및 전문 기관의 검토 · 협회나 기업의 자율적 추진방안 |
| 전담조직의 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전담기구의 설치 · 기존 행정기관에 기능부여 · 민간부문에서 전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행정기관이나 민간기구의 활용 |
| 인센티브 유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적 규제의 면제, 보류 · 세금 감면 및 경제적 지원 · 행정서비스 및 기술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모색 · 해당분야별 인센티브의 개발 |
| 중소기업참여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을 통한 자발적 참여유도 · 규제를 통한 의무 가입 강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장벽 및 차별 수단화 방지 |

자료 : 하성훈,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자발적 협약의 도입에 관한 연구」, 현대환경연구원, 1998.4, P65.

때문이다.

셋째, 자율환경관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제지원 및 자금지원, 기술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참여기업과 불참기업간에 뚜렷한 차이를 두어 환경개선을 위한 자율환경관리에의 참여가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율협약의 효과를 중대하기 위해서는 또한 정부의 예산지원, 산업후원조직(industry-sponsored organization)도 필요하다. 간접적인 제재(threats in the background)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과 후원의 수준도 기업의 참가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초기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은 간접적인 제재의 필요성을 줄일 수도 있다.

넷째, 자율환경관리를 신축성 있게 해석하여 대상환경문제, 참여집단특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다양한 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율환경관리 초기모형은 유해화학물질관리나 재활용을 제고 문제였으나 이제는 이산화탄소(에너지)의 배출감소 그리고 청정기술의 개발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해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자율환경관리는 산업활동의 부분은 물론 전과정 즉 자원의 채취·유지 관리와 지원 그리고 생산활동에서 효율적인 분배와 재활용/재이용에 걸친 협정도 가능하다.

끝으로, 우수한 실적평가 및 보고체계가 필수적이며 그 보고내용은 공개되어야 한다. 실적평가와 보고서 제출의 무는 참가자에게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획과 추진에 있어 각별한 준비가 요구된다. 자율협약의 효과는 어떻게 계획이 짜여 지고, 모니터링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자율협약의 성공은 사회경제적, 심지

어 문화적 요인을 포함해 기술발전, 경기흐름(business cycle)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기업주의 리더십도 협약의 성공요인으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자율환경관리의 성공여부는 어떤 기업의 환경영향에 대한 인식이 소비자의 구매행태에 반영되어 기업의 경영성과를 좌우할 때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소비자와 가까운 기업일수록 자율참여도가 높아 소비자와 근접한 산업을 대상으로 한 자율환경관리가 성공가능성이 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정부, 관련단체 등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과 상호지원이 필요하다.

는 단일모형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실정에 대한 배려가 다소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17) Seema Arora and Timothy N. Cason, "Why Do Firms Volunteer to Exceed Environmental Regulations ? Understanding Participation in EPA's 33/50 Program," *Land Economics* 72(4) (November, 1996): 413-432.

18) 하성훈,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자발적협약의 도입에 관한 연구」, 현대환경연구원, 1998. 4.